

라벨 표시 - 일반 요건

뉴사우스웨일즈 식품청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규정(이하 '규정')의 라벨 표시 조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청은 NSW 식품법 2003 도 집행하며, 식품법에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라벨 표시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총 무게와 측정 내용의 유무 및 정확성, 이 항목은 국립 측정연구원에서 총괄(그러나 식품청은 재료 함량 백분율 표시에 대해 책임이 있음)
- 바코드
- 재활용 코드
- 애완동물 식품의 성분과 라벨링
- 식품의약청에서 등록하여 관리하는 치료 제품(식이 보조제 및 건강보조 식품 포함)

식품 라벨 표시

식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의 내용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벨에 표시된 정보는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포장 외부면에서 보일 것
- 모호하지 않고 명확할 것
-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을 것.

포장하지 않는 식품은 대부분의 라벨 표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특정 정보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라벨 표시 예외* 조항 참조). 특정 포장 식품의 경우에도 라벨 표시 요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됩니다(*라벨 표시 예외* 조항 참조).

식품법에 따라 광고 정보는 라벨 표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식품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

식품 라벨은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 규정에서 정한 **식품명** 또는 식품의 원래 성분을 설명하는 이름/설명
- 동일한 조건으로 특정 기간에 제조된 식품의 **생산 '로트'**(특정한 경우 날짜 코딩이 로트 번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식품 제공업체(예: 제조업체, 판매자 또는 수입업체)의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상호와 주소**
- **원료 목록**
- **제품 유통기한** 문구, '사용 기간'이나 '유효 기한' 날짜 중 하나(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내서 *라벨 표시 - 날짜 표기, 보관 조건 및 사용 안내* 참조)
- 건강과 제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 및 보관 지침**
- **영양성분표(NIP)** - 해당 식품의 일회분 및 100g 당 포함된 기본 영양 성분의 양을 표기. 특정 포장 식품(예: 주류, 물, 허브, 향신료, 시판 샌드위치)은 NIP 부착 요건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 제품과 원료의 **원산지**(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내서 *라벨 표시 - 원산지* 참조)
- **경고 및 권고사항**과 알레르기나 음식 과민증이 있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안내(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내서 *식품 알레르기*와 *과민증* 참조)

개별 포장 식품

소매업체에서 치즈 휠, 가공육류식품, 견과류와 콩류 등을 대용량 포장

상태로 구매하여 매장에서 일회분으로 나누어 재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이런 식품들을 셀프 서비스 매대에 진열합니다. 개별 포장 식품에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라벨 표시가 필요하지만, 소매업체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개별 포장 식품마다 라벨 부착
- 개별 포장 식품 가까운 곳의 안내표지/소책자 또는 뜯어내는 팜플렛에 라벨 표시 정보를 게재.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보가 어떤 개별 포장 식품을 가리키는지도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함. 자주 변경될 수 있거나 소비자 안전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예: 유통기한, 로트 코드, 보관 조건, 알레르기 물질)는 라벨에 표기하여 해당 개별 포장식품에 부착해야 함.

라벨 표시 예외

소매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일부 식품은 일반 라벨 표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식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가 적용됩니다.

- 비포장 식품
- 외부 포장 없이 판매되는 용도가 아닌 '내부' 포장 상태의 식품
- 다음과 같은 용도로 매장에서 만들어 포장하여 판매되는 식품
 - 매장에서 '제조'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식품. 이러한 식품은 매장에서 포장하기 전에 식품의 성질을 변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단순히 대용량에서 날개의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하는 것은 라벨 표시 예외 대상 식품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구매자 앞에서 포장되는 식품
 - 고객이 식품 포장 과정을 직접 보고 판매자에게 해당 식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매업체에서 이를 라벨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서비스 편의상 포장하여 매대에 진열하는 식품
- 식품의 성분과 품질을 볼 수 있는 포장재에 전체 또는 일부 잘라서 담은 야채나 과일(싹이 트 씨앗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고객의 주문에 따라 배달되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식품
- 기금 마련 행사에서 판매되는 식품(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내서 *자선 및 비영리 기관에 대한 식품 안전 요건* 참조).

비록 예외 대상 식품이라 할지라도 안전상의 이유와 유전자 변형이나 방사능 처리 식품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경고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로얄 젤리, 유전자 변형 또는 방사능 처리 식품은 제외하고, 식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요청하는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요건들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식품청 웹사이트 방문: www.foodauthority.nsw.gov.au
- 상담 전화 1300 552 406 번으로 연락
- 식품 표준 규정 1.2 부에 자세히 설명된 라벨 표시 정보 참조
- 식품의약품 웹사이트 방문: www.tga.gov.au

About the NSW Food Authority: The NSW Food Authority is the government organisation that helps ensure NSW food is safe and correctly labelled. It works with consumers, industry and other government organisations to minimise food poisoning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nd regulating the safe production, storage, transport, promotion and preparation of food.

Note: This information is a general summary and cannot cover all situations. Food businesse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Food Standards Code and the *Food Act 2003*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Food Authority

6 Avenue of the Americas, Newington NSW 2127

PO Box 6682, Silverwater NSW 1811

T 1300 552 406

contact@foodauthority.nsw.gov.au

ABN 47 080 404 416

More resources at foodauthority.nsw.gov.au



[nswfoodauthority](https://www.facebook.com/nswfoodauthority)



[nswfoodauth](https://twitter.com/nswfoodauth)

Labelling general requirements, March 2016
NSW/FA/FI048/1511-KOR